

「2026년 대구스타트업 리더스포럼」

제65차 IR피칭 참여기업 모집 공고

(재)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 7년 이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지역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구스타트업 리더스포럼을 운영하고, 다음과 같이 IR 피칭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년 9월 23일

(재)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

1. 공고 개요

- ☐ 행 사 명: 제65차 대구스타트업 리더스포럼
- ☐ 행사일시: 2026. 12. 16.(수) 13:30 ~ 18:00
- ☐ 행사장소: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C-Quad(대구시 북구 호암로51)
- ☐ 공고일정: 2026. 9. 23.(수) ~ 11. 24.(화) 18:00까지

2. 모집 개요

- ☐ 모집규모: 8개사 내외
- ☐ 신청요건: 전국 만 7년 이내 창업기업(개인, 법인)
 -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‘사업을 개시한 날’로부터 7년 이내 창업기업(접수일 기준)

-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상 ‘개업연원일’ 기준
- 법인사업자: 법인등기부등본 상 ‘법인설립등기일’ 기준
- 다수 사업자를 소지한 경우, 최초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기준

3. 지원내용

☐ 사전 IR 코칭 프로그램(필참)

- IR 피칭 및 IR DECK 코칭
 - 전략적 투자 유치를 위한 IR 컨설팅 1회 실시
 - IR Deck 디자인 제작 지원(일부 기업)

☐ 대구스타트업 리더스포럼 당일 IR피칭(필참)

- 포럼 당일 IR 피칭
 - 지역 내외 투자자 약 20명 현장 참여 및 일반 청중 참관
- 투자자 1:1 투자 상담
 - 사전 매칭 투자자와 1:1 투자 상담 지원(기업당 3~4회)
- 부스설치 및 네트워킹
 - 아이템 소개를 위한 기업별 부스 설치 및 네트워킹

※ 선정평가 포함, 리더스포럼 전체 일정은 대표자가 필수 참여하여야 함

☐ 기타 후속연계

-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직접 투자 및 중기부 TIPS 추천 검토
-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TIPS 운영사 투자 검토 연계
-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타 지원사업 연계 안내
- 대구스케일업허브, 유니콘 랩 등 입주공간 지원 연계 안내 등

4. 공고 및 운영일정

☐ 리더스포럼 공고 및 운영 일정

내 용	세부 일정	비고
모집공고 및 신청접수	2026.09.23.(수) ~ 11.24.(화) 18:00	대구창업허브(DASH) 등
IR 참여기업 선정평가	2026.12.02.(수)	대면 발표평가
선정기업 안내	2026.12.03.(목)	개별 통보
IR 참여기업 코치데이	2026.12.09.(수)	선정기업에 한함
제65차 리더스포럼	2026.12.16.(수) 13:00 ~ 18:00	

※ 상기 일정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내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. 신청 및 제출서류

☐ 신청방법

- DASH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(<https://startup.daegu.go.kr/>)

☐ 제출서류

- (필수) 대구스타트업 리더스포럼 IR피칭 참가 신청서 1부
- (필수) 사업자등록증 1부
- (필수) 법인등기부등본 1부(해당시)
- (필수) IR피칭 자료 1부(5분 발표 분량)
- (선택) 사업 소개 관련 기타 자료, 특허, 증빙자료 등

※ 이메일 또는 오프라인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

6. 문의처

소속	담당자	연락처
(재)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운용팀	강여진 매니저 박혜령 매니저	053-359-3669 / yj980605@ccei.kr 053-759-8615 / ryung@ccei.kr

붙임

신청 제한 안내

①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도용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 작성된 경우

②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* 단,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의결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
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*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
⑤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(기업)

⑥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